

경찰의 위법 행위를 직접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

시민민원심사위원회(CCRB)에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위원회에서 NYPD 경찰관의 위법 행위에 대한 민원을 조사 및 조정합니다.

CCRB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으로, 경찰국(Police Department) 소속이 아닙니다.

민원 제기 방법

- ▶ 핫라인으로 전화: **1-800-341-2272**
- ▶ **311**로 전화(24시간 상시 가능)
- ▶ 사무소 방문: 100 Church Street, New York, NY 10007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5시,
예약은 필요하지 않음
- ▶ 온라인으로 민원제기 양식 작성:
www.nyc.gov/ccrb
- ▶ 상기 주소로 서신 작성
부상을 입은 경우, 즉시 의료 조치를 취한 다음 부상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십시오.

Civilian Complaint Review Board

NYC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위해 정지시키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민원인의 말과 행동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로 인해 민원인을 추가적으로 불편하게 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미치는 사건으로 확대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팁

- 침착함을 유지하고 행동 반경을 줄입니다.
- 손이 보이도록 하고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안절부절못하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경찰관은 숨겨둔 무기를 찾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정중하게 말하십시오. 논쟁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팁(계속)

- 체포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자리를 뜨는 행위와 같이 경찰관이 대상자를 억류하려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저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 혐의를 받거나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항상 신분증을 소지하십시오. 신분증 소지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 소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관과의 접촉과정에서, 경찰관의 신분증 번호와 성명과 같이 세부적인 사항에 주목하십시오. 경찰은 요청을 받으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의 신체적 특징과 순찰차 번호를 기록해 두십시오.

경찰청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경찰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민간인에게 접촉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민간인을 불심검문(일시 억류)할 권리가 있습니다.
- 불심검문 시, 경찰관이 합리적으로 민간인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몸수색을 하거나 겉옷 가지를 더듬으며 무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경찰관이 물체를 감지하고 이것이 무기일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경찰관은 민간인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해당 물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NYC 주택청(Housing Authority) 건물을 순찰하는 경찰관들의 경우,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그곳에 머무는지, 즉 이들이 합법적 거주자인지 또는 합법적 방문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